

第306回國會
(臨時會·閉會中)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2年4月17日(火)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

(14시09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태원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강기정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4시11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 마쳤으나 대체토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둘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숙려기

간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셋째 위원회에서 쟁점안건의 조정을 위하여 여야 동수로 6인 안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일정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음 심사단계로 자동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섯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아니하면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일곱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여덟째 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경우 수당 등의 감액 수준을 강화하며, 아홉째 상설 소위원회에 대하여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18대 국회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이 취지와 또 동

기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직권상정을 제외하고 또 충분한 의사 개진을 위해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내용 중심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다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은 거의 많이 빠져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중단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제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교섭단체가 거의 합의하면 이것은 뭐 소수정당은 아무리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는 왜 18대가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왔고 국회 폭력이 지탄을 받아왔던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지탄하고 질책을 한 것이 국회의 폭력적 그런 모습은 어떤 결과적 현상이겠지만 원인으로 보면 언제든지 국회는 선거 때만 서민 찾고 국민 찾지 선거만 끝나고 나면 재벌들, 부자들만을 위하는 그런 곳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대 정당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 왔지요. 거기에서 소수정당이나 소수의 의견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18대에서는 청와대에서부터 당의 그런 강령과도 같은 지침이 내려오면 일사불란하게 날치기를 몇 번을 거듭하면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국회가 물리적인 충돌을 엄청나게 키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 개정안을 이런 형태로 낸다고 보았을 때, 또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의,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방적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소수정당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교섭단체 중심의 합의만 봐 버리면 완전히 의견이 무시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다섯 번째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산회 없이 토론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실제로는 5분의 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토론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여섯 번째 위원회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 다음날 본회의로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또 다수당이 목적의식적으로 이것을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끌고 할 때에는 나중에 가서는 12월 2일 24시까지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토론까지도 제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간다면 예산안 심의 없이 그냥 바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들을 이런 형태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중요한 사안들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심의를 계속 거부하고 이런 전략적으로 수만 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와서 또 날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18대 말미에서도 이런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꼭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19대, 지금 어차피 선거도 다 끝나고 구성원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당론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은 19대 때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데 거기의 구성원들인 19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뭐 대부분은 재선이 되어 가지고 또 19대의 구성원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18대 마지막에 19대의 구성원이 안 된 18대 의원들로 해서 이 중요한 사안들을 당론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밀어붙여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은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폭력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백분 이백분 저도 찬성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국회는 당선되고 나면 재벌들, 부자들만을 위하는 국회로 그렇게 잔치판을 벌여왔지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눈을 안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대정당은 특히 18대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한 부

한의 책임을 우리 18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법안 처리의 큰 방향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를 덧붙이면 다수 여당은, 현행 직권상정 제도가 남아 있는 한은 다수 여당은 언제든지 거기에 의지해서 처리하고 밀어붙여서 일방 처리하는 것을,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고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소수 야당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극한 대결이 쉽게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 강 대 강의 대결 정치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우리 국민의 대표들이 그 게임의 틀에, 구도에만 들어가면 전부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직권상정의 여지를 거의 없애는,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하는, 근본적으로 직권상정의 여지를 줄이고 또 국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의안 조속 처리 제도, 소위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로 보완을 하는 것의 게임의 룰을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19대 의석 분포로 볼 때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고서는 패스트 트랙을 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좋은 시기에 이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 가면 또 다시 작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말려서 이 법안이 또 사장되고 또 처리 못 하고, 한 번이라도 19대 국회에서 어떤 돌발사태가 생겨서 또 다시 몸싸움하는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우리 여야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라는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 제85조의2제5항에 보면 패스트 트랙이 발동된 경우에, 의안조기처리 제도가 상임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처리가 되는 경우에 법사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회가 짝수 달에만 열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6월 국회 다음에는 지금까지 관행이 8월 하순에 한 열흘 열리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60일 내'가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소수당에게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 60일을 120일로 늦춰야 한다, 120일로 늦추게 되면 소수당이 어떠한 안건이든지 적어도 1년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합쳐서 1년은 본회의 상정 표결 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야만 의안의 조속처리를 막을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안은 2월 국회 때에도 제가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의 황우여 대표에게 의견 개진을 했고 황우여 대표도 공감을 했던 분야라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85조의3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면 삭제하고 안 제106조의2제10항을 역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 2개의 조문은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예결위이지요—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12월 2일까지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 때에는—2월 국회 때입니다—예산회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예산안이 현재는 국회에 10월 2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 날 예산안이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안봐도 한 달은 봐야 할 텐데 한 달 보는 등 마는 등 하고 11월에 예결위 넘기면 예결위에서 또 한 달 동안 심의하다가 안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해 버리고 만다, 이래 가지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어차피 수밖에 곁핼기 식 조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와 민주화의 성숙도를 가진 선진국들은 대체로 국회가 1년 열두 달 예산을 심의하든가 예산안 편성 과정 자체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해서 편성 준칙부터 새로 만들든가, 안 그리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최소한 6개월의 심의기간을 부여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예산회계법의 주기를 바꾸어서 적어도 8월 1일 전에는, 현재의 10월 2일보다 두 달을 앞당겨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조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의정 사상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2월 2일이 아니라 12월 말까지는 예산안은 표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2월 2일까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게 된다는 조문을 강제조문으로 두게 되면 정부여당은 자칫하면 이 조문의 위력 때문에 예결위 심의나 상임위 심의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우려가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회계법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나 이것이 부족하고 의결정족수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또 정부의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이 조문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19대 국회로 이 부분은 넘겨서 19대 국회 예결위에서 또 정부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예산회계 편성과 처리 절차, 주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그것과 함께 처리해서 이 조문은 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 두 가지 조문의 삭제와 수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이 안건이 오늘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방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매우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85조2 3항의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대상은 법사위에서의 체계·자구 심사이고 60일을 120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180일 이내로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서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120일보다 지금 더 긴 기간인 180일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을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다고 한 것은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기한 때문에 그런 것인데 8월 1일로 국회로 예산안을 편성된 것을 행정부에서 넘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헌법에 준해서 국회 운영의 사이클을, 주기를 조절을 해 가는 것을 합의해서 지금의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놓고 나서 관련된 법률안들을 19대에 가

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 대신 지금 노영민 수석하고 황영철 위원께서 두 분이 좀 조절을 하셔서, 간사 대행으로……

○**황영철 위원** 저보다는 이 법안은 김세연 위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세연 위원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김세연 위원이 좀 수고해 주실까요?

편의상 그러면 김세연 위원께서 좀 조절을 해주셔서 가지고 조절이 되는 대로 다시 해서 의결하도록 하지요.

될 수 있으면 오늘 마쳤으면 하기 때문에 토의 과정을 좀 검토하시면서 조절을 하셨으면 합니다.

○**황영철 위원** 나가시기 전에 숙의 시간을 좀 정해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간사간에 협의한 결과 안건신속처리제와 관련하여서는 7월 및 8월 폐회 기간을 감안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85조의2제3항 중 ‘60일’을 ‘90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회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적정한 심사 기간의 확보를 위해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안 제85조의3과 안 제106조의2제10항은 그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간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이 현재(10월 2일까지)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2013년 5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중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 어쨌든 원안에서 두 가지 사안이 좀 수정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개선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이,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회는 부자병이 걸려 있다’, 당선만 되면 그냥 부자를 위해서 판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은 어쨌든 지방은 홀대당할 수밖에 없다, 당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람의 몸도 병이 걸리면 통증이 와야 됩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쨌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어쨌든 폭력적 이런 뭐 불미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몸에 병이 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런 물리적 충돌이 안 와야 되지요.

그러나 병이 오면 통증이 와야 되는 것인데 단지 이 통증 자체를 없애는 것은 뭐 마취제를 놓아서 없앨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안 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처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이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을병이 걸렸는데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듯이 국회가 그동안에 물리적 충돌이 오고 어떤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부자병이 걸린 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통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 심판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18대 국회의 심판은 국민들이 18대 마지막 단계에서 민심이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번 이 개정안 역시도 그런 원인적 처방 없이, 개선 없이 당장 국회가 물리적 충돌만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소수 정당이나 소

수 의견들이 무시되고 그것이 서민 홀대, 외면으로 국회 운영이 또 되지 않겠나 하는 강력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부대의견 첨부 중에 주 내용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당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혹시 수석위원님, 이게 부대의견에 ‘여야 간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는 이 진행 상황을 정부가 알고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니요, 지금 모릅니다.

○金光琳 委員 전혀 모르고 있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이것은 향후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정부의 의견을 듣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金光琳 委員 아니,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되어 있는 거를 한 달 당기든지 보름 당기든지 당기는 걸 선행조건으로 하고 이거를 내년도 5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고쳐라, 그런데 안 고칠 때에는, 그렇지 못할 때는 국회법 중 예산안 등 본회의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한다, 이거는 2013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러면 정부 의견이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정부 의견을 들어서 편성 순기를 맞춰서 한다, 이런 내용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은 반대 의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강기갑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국회인사 청문 대상 확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2월 14일에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오늘 의결할 법안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결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설명된 내용 중에서 지난 2월 14일에 의결한 사항은 제외하고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기갑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강기갑 위원님 한 분 반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달리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수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해 온 의안 처리 절차 및 질서유지 개선안이 오늘 의결됨으로써 제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의 안건 처리가 국민들께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물리적 충돌 없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의 효과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 주체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처리 절차 개선 및 질서유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제19대 국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여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경청하는 정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도 항상 일면의 진리가 있다는 존중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토론과 협상을 거쳐서 대화와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합의정신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된 법안이 준비되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민주통합당 존경하는 김진표 원내대표님과 노영민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였던 이명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처리 개선 절차를 만드시는 6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이두아 위원님, 박우순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조심사를 통해 법안을 다듬어 주신 이상권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등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 역사적인 과정과 순간에 동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힘을 보태 주시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온 열정을 바치신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또 대한민국 국회에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기갑	김광림	김세연	김진표
김태원	노영민	백재현	유일호
유재중	윤상일	이영애	이학재
최규성	홍영표	황영철	황우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입법심의관	이계인

【보고사항】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이명규	새누리당	탈당	2012. 3. 21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호연	이학재	새누리당	2012. 4. 17
윤영	이영애		
이두아	김태원		
김재윤	최규성	민주통합당	
박우순	강기정		
이운석	백재현		